인제군 고시 제2025 - 142호

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군관리계획(시설 : 주차장, 공간적범위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인제군 북면 원통리2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새로이 확정된 지적을 반영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자 「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」 부칙 제2조 제2항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2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에서 열람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5년 7월 24일

인 제 군 수

가. 결정(변경) 취지 :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 새로이 확정된 지적을 반영하여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자 함.

나. 위 치 : 인제군 북면 원통리 731-10번지 일원

다. 군관리계획(시설 : 주차장, 공간적범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가) 교통시설

•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(면적 변경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6	북면 제6주차장	주차장	북면 원통리 731-10 일원	2,454.7	감) 19	2,435.7	인제군고시 제2018-18호 (2018.1.26.)	-

• 주차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6	북면 제6주차장	• 시설 면적 변경 - A = 2,454.7㎡ → 2,435.7㎡ 감) 19㎡	• 원통리 일원 지적재조사사업(인제군고시 제2025-132호)에 따른 면적 변경

나) 공간적범위 (변경없음)

• 공간적 범위 결정 조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구분	면 적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6	북면 제6 주차장	북면 원통리 731-10일원	층수	지상1층~지상2층	-	• 도시계획시설 : 주차장
			층수	지하층,지상3층~지상4층,옥상층	-	• 비도시계획시설 : 근린생활시설 (복합커뮤니티시설)

※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

라. 인제 군관리계획(시설 : 주차장, 공간적범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(게재생략)